

2026년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8. 24.

대 전 광 역 시 장

I 사업 개요

- ☐ **사 업 명:** 2026년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본인이어야 함
 -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신청 불가
- ☐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 생애 1회
 - ※ 지급대상 월세: 2026년 7월 ~ 2027년 6월
 - ※ 월세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만 지급(관리비 제외)
- ☐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2026. 8. 31.(월) 09:00 ~ 9. 10.(목) 18:00 / 11일간
 - 선정인원: 1,000명
 - 신청방법: 대전청년포털 온라인 신청(<https://www.daejeonyouthportal.kr>)
 - 선정방법: 소득 및 임차료 배점 비율 적용,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선정발표: 2026. 10. 30.(금) 17:00 예정
 - 지급방법: 월세 선 납부 확인 후 계좌입금 ※ 지급일정 5쪽 참고

Ⅱ 신청 자격요건

□ 자격 요건

- (주 소)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함.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청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자

※ 2인 이상 가구인 경우, 청년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연 령)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86. 1. 1.~ 2007. 12. 31. 인 자

- (거 주)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전월세 환산액이 80만원 이하면 신청가능

※ 전월세 환산액 = 월세 + (임차보증금×4.75%÷12개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 + 대통령령이 정한 2.0%

예시) 임차보증금 2천만원 & 월세 70만원인 경우,

→ 전월세 환산액 = 70만원 + (2천만원 × 4.75% ÷ 12개월) = 779,166원 (80만원 이하로 신청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 예시: 1년 월세 1회 선납(연세)
- 계약서 1건 당 1명만 신청 가능

※ 단,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 인정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 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 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 월세 80만원

⇒ 임차보증금 3천만원 &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

○ (소 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인의 2026년 7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심사

※ 각 세대원 또는 부부가 건강보험 별도 가입 시 합산하여 소득 판정

※ 가구원 수는 제출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

(단위: 원 / 2026년 7월분)

구분	가구원수	월 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7인	11,419,000	432,308	404,529	457,613

<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거나 수혜 중인 사람
-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기선정자로 1회 이상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 '26년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신청하였더라도 '26년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로 선정될 경우 선정 제외
- 정부(공사,공단, 기금 포함), 지자체 주거 관련 금융지원, 월세 지원 등 유사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자
 -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전)청년·청년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사업, (대전)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이차지원사업 등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배우자'이거나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LH, 대전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을 위해 참여 신청 중인 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III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대전청년포털 온라인 신청(<https://www.daejeonyouthportal.kr>)

※ 청년 본인 명의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필요 / 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6. 8. 24.)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모든 서류는 발급용으로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열람용 인정안됨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 등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암호(보안) 해제후 제출 필수, 제출 후 수정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추가 서류 요청시 보완기간: **2026. 9. 30.(수) 09:00 ~ 10.2.(금) 18:00**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① 지원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대전청년포털 작성
② 개인정보동의서 (해당 시)	• 신청자 제외 등본 상 세대원 있는 경우 세대원 서명 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 첨부 란에 등본과 병합하여 제출			
③ 무주택 약약서	• 신청자 및 등본상 세대원 포함 전원			
④ 주민등록등본	• 관계, 세대원, 전입일 등 모든 내용 표시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로 발급			○ 정부24(https://plus.gov.kr) ○ 동 행정복지센터
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자 본인 기준 '상세'로 발급 - 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 기준 추가 제출			○ 정부24(https://plus.gov.kr) ○ 동 행정복지센터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자 본인 기준 '전체' 이력(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속하여 전체 이력 나오게 발급)			○ 정부24(https://plus.gov.kr) ○ 동 행정복지센터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로그인→민원서비스→서비스찾기→ 보험료조회 →직장(지역)보험료 조회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 (최신순) 캡처
⑦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 관련 제출 서류 - 등본 상 세대원 있는 경우 세대원 기준 추가 제출			
	*본인이 납부자(부양자)인 미혼 청년 본인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	**본인이 피부양자인 미혼 청년 본인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납부자(부양자) 기준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	기혼 청년 본인, 배우자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6년 7월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피부양자 또는 지역세대원 ※ 해당월 보험료가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캡처)* 추가 제출			
⑨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임대인·임차인 서명(인), 임대인 계좌번호 포함 필수) •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FAQ 참고 (기숙사생) • 거주 사실 확인서(입실 확인서) • 생활관비 납입 증명서			

IV

대상자 선정

□ 선정인원: 1,000명

□ 선정방법

○ 소득 기준 점수(60점) + 임차료 기준 점수(40점) 적용,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소득 낮은 순 → 연장자 순

- (소득 산정기준) '26년 7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 (임차료 산정기준)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4.75%÷12개월)+월세

□ 선정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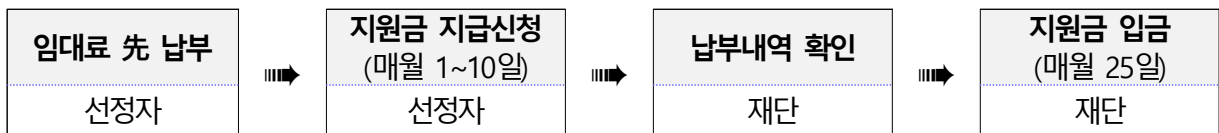
○ 발표일: 2026. 10. 30.(금) 17:00 예정 / 대전청년포털, 개별문자

V

선정자 이행사항

□ 지원금 지급 신청(매월)

○ 지원절차 ※ 지급일자가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차주 평일에 지급



○ 지원방법: 매월 본인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계좌 등 예외 허용

○ 지급신청 일정 ※ 예산상황 등에 따라 지급일정 변동 가능

선정자 이행사항	신청기간	지급일
'26. 7,8,9월분 월세 지원금 지급 신청	2026. 11. 1. ~ 11. 10.	2026. 11. 25.
'26. 10,11월분 월세 지원금 지급 신청	2026. 12. 1. ~ 12. 10.	2026. 12. 28.
'26. 12월분 월세 지원금 지급 신청	2027. 1. 1. ~ 1. 10.	매월 25일
'27. 1월분 월세 지원금 지급 신청	2027. 2. 1. ~ 2. 10.	
'27. 2월분 월세 지원금 지급 신청	2027. 3. 1. ~ 3. 10.	
'27. 3월분 월세 지원금 지급 신청	2027. 4. 1. ~ 4. 10.	
기한 내 미신청한 월세 지원금 지급 신청	2027. 4. 20 ~ 4. 25.	2027. 5. 14.
'27. 4월분 월세 지원금 지급 신청	2027. 5. 1. ~ 5. 10.	매월 25일
'27. 5월분 월세 지원금 지급 신청	2027. 6. 1. ~ 6. 10.	
'27. 6월분 월세 지원금 지급 신청	2027. 7. 1. ~ 7. 10.	
기한 내 미신청한 월세 지원금 지급 신청	2027. 7. 20. ~ 7. 25.	2027. 8. 13.

○ 제출서류

※ 대전청년포털에서 신청기간 내 별도 지급신청 필수

구분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지급 신청	① 지급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대전청년포털 작성
	②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 아래 내용 모두 포함하여 발급 1) 보내는 사람* 2) 받는 사람 3) 보내는 계좌 4) 받는 계좌 5) 납부금액 6) 납부일자 * 신규신청 시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가능한 이체자(부모, 배우자)만 예외적 인정 ※ 단순 거래내역조회 불가	○ 해당 은행 어플 ※ 발급 기관에 문의 요망
	③ 통장 사본	• 지급신청서에 작성된 청년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압류계좌 및 적금 계좌 불가 • 처음 1회만 제출 / 변경시 변경 통장사본 첨부	

※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추가 제출

① 개인신용정보조회서* / 신용불량 여부는 시중은행의 신용점수 기준에 따름

*한국신용정보원,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크레딧포유 발급분만 인정

② 친족* 통장 사본 /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③ 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④ 대리수령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변경 및 중지 신청

○ 변경신청: 관내 주소 이전,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변경 신청	① 변경 신청서(온라인)	• 온라인 작성 • 사유 발생 시 변경 신청 후 지급 신청 필수 (지급 신청 우선시 변경 신청 불가)	○ 대전청년포털 작성
	② 확정일자 날인된 새 임대차계약서	• 변경 사항이 반영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임대인 서명(인), 임대인 계좌번호 포함 필수	
	③ 주민등록등본	• 해당 주소지 전입신고 상태 확인	○ 정부24 (https://plus.gov.kr) ○ 동 행정복지센터
	• 이외의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ex) 임대인 변경: 해당 주소지 등기부등본 추가 첨부		

○ 중지신청: 사유 발생 시 대전청년포털(온라인)을 통한 중지신청

※ 중지 신청 시 재개 불가 및 익월부터 지원금 지급 중지

※ 지원 중지 사유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등 포함)하게 된 경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 지원 또는 대출 등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되었거나 개인 거래 통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지원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VI 기타 유의사항

-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신청, 변경, 지급 신청 모두 대전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 본 사업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등과 중복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제출한 서류 및 정보 수정은 불가하며, 공고문 및 FAQ(자주 묻는 질문) 미숙지, 허위·착오 작성, 제출서류 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29, 8031~8034, 8038, 8431)으로 문의 바랍니다.